

<부록 2 : 연구데이터 개방 및 제공 지침>

연구데이터 개방 및 제공 지침(안)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연구데이터 개방, 공유 및 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연구데이터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연구데이터”라 함은 연구사업의 각종 실험, 관찰,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 연구성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한다(연구데이터관리규정 참조).
2. “GDR 시스템”이라 함은 연구데이터의 수집·관리·보존 등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.
3. “오픈플랫폼”이라 함은 연구데이터 개방 및 제공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.

제3조(기본 원칙) 1. 연구데이터를 외부에 개방(제공)하고자할 경우 ‘GDR 시스템’에 등록 후 연구데이터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, 심의결과 ‘개방 연구데이터’로 확정된 경우 ‘지오빅데이터 오픈플랫폼’에 등록하여 개방한다.

2. 연구데이터를 개방하는데 있어 아래와 같은 FAIR 원칙을 준수하여 연구데이터의 접근성과 재사용성을 높이도록 한다.

- o Findable(검색 가능) : (메타)데이터에 DOI 등 영구식별자를 할당하고 데이터 리포지터리에 등록하여 검색 가능하도록 함
- o Accessible(접근 가능) :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식별자를 통해 데이터(데이터가 이용가능하지 않을 경우 메타데이터)에 접근 가능하도록 함
- o Interoperable(상호 운용 가능) : 데이터는 표준적인 방식과 어휘를 사용하여 상호 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, 관련된 다른 데이터에 대한 인용을 포함함
- o Reusable(재사용 가능) : 명확한 데이터 라이선스와 출처 정보를 제공하여 재사용 가능하도록 하고, (메타)데이터는 관련 분야의 표준에 부합하도록 함

제 2 장 연구데이터의 개방 절차 및 제공 방법

제4조(담당부서 및 역할) ① 연구데이터 개방 및 제공업무는 연구데이터관리부서가 담당한다.

② 연구데이터관리부서는 연구데이터 개방 목록 및 제공 실적을 관리한다.

제5조(개방 절차) ① GDR 시스템에 등록된 연구데이터의 개방시기가 도래할 경우 연구데이터관리부서는 ‘개방 예비후보 연구데이터 목록’을 작성하여 연구데이터 등록자가 속한 부서에 연구데이터의 품질점검, 개방 가능 유무(개방 불가 시 사유 기재), 유상/무상(개방 시), 유상의 경우 가격 등을 요청하여 의견을 수집한다.

② 연구데이터관리부서는 수집된 의견을 반영하여 ‘개방 후보 연구데이터 목록’을 작성하고, 연구데이터관리위원

회의 심의를 받아 ‘개방 연구데이터 목록’ 을 확정한다.

- ③ 연구데이터관리부서는 ‘개방 연구데이터 목록’ 의 연구데이터를 오픈플랫폼에 등록하여 개방한다.
- ④ GDR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연구데이터를 외부의 요청이나 혹은 생산자가 원하여 개방하고자 할 경우 연구데이터 생산자는 품질점검 후 GDR 시스템에 등록하고, 연구데이터관리부서는 연구데이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픈플랫폼에 등록하여 개방한다.

제6조(제공 방법) ① 개방 연구데이터는 오픈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필요한 경우 연구데이터관리부서를 통해 전자우편 혹은 오프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다.

- ② 무상으로 제공되는 연구데이터는 오픈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한다.
- ③ 유상으로 제공되는 연구데이터의 경우 오픈플랫폼에 전자구매시스템 도입 전까지는 지식정보실을 통하여 제공하고, 전자구매시스템 도입 이후에는 오픈플랫폼에서 제공한다.
- ④ 유상으로 제공되는 연구데이터 중에서 아래 각호의 경우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.
 - 가. 정부부처 및 소속(부속)기관, 지자체
 - 나. 우리연구원과 공동연구(논문작성 포함)
 - 다. 우리연구원 직원
 - 라. 기타: 연구데이터관리위원회 심의 필요
- ⑤ 엠바고 등의 사유로 데이터 파일 없이 메타데이터만 개방된 경우에는 연구데이터 생산부서의 검토를 거쳐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.

제 3 장 연구데이터의 활용 신청 방법

제7조(활용 신청) ① 연구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오픈플랫폼에서 ‘활용신청’ 기능을 이용하여 신청하고, 오픈플랫폼에 등록되지 않은 연구데이터의 경우 별첨 1의 ‘연구데이터 활용신청서’ 를 작성하여 연구데이터관리부서로 신청한다.

- ② 연구데이터관리부서는 연구데이터 생산부서에 제공가능 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의뢰하고, 생산부서는 검토결과와 제공이 가능한 경우 데이터 파일과 함께 연구데이터관리부서에 회신한다.
- ③ 연구데이터관리부서는 연구데이터 제공가능 여부와 제공이 가능한 경우 데이터 파일과 함께 신청자에게 제공한다.

제 4 장 연구데이터 활용 결과물의 공유

제8조(데이터 인용방법) ① 연구데이터를 제공받은 자가 그 활용 결과물을 논문, 보고서,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공표할 경우 결과물에 데이터 인용문구를 포함하여야 한다.

- 데이터 인용문구 형식: 저자(날짜), 제목, DOI

예: 홍길동(2020.11.01.), 적외선 분광 분석데이터, <https://doi.org/10.22747/data.20201009.58>

제9조(활용 결과물의 공유) ① 연구데이터를 제공받은 자가 그 활용 결과물을 공표할 경우 오픈플랫폼의 활용갤러리에 등록하여 공유하여야한다.

부 칙(2021. 00. 00)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